

기본소득과 생태적 전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1. 1980년대의 특이성 – 생태주의와 기본소득의 만남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본소득 논의의 사회적 배경은 소득불평등과 탈빈곤이었다. 몇 차례의 모의실험을 거친 후 북미의 기본소득 논의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에서 다시 현대적 기본소득 논의가 점화되었다. 1980년대 논의의 특징은 생태주의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이다. 1980년대 주요한 기본소득 이론가인 앙드레 고르츠André Gorz, 토마스 슈미트Thomas Schmid, 미하엘 오피일카Michael Opielka, 게오르크 보브루바Georg Vobruba 등은 생태주의 사회철학자이거나 녹색당과 연관 있는 인사들이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한편으로는 대량 실업과 다른 한편으로

는 생태주의적 인식의 확산을 배경으로 삼고 있었으며, 설비투자과 확대재산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려는 생산주의적 압박에서 벗어나 노동시장과 사회를 재구성하는 생태주의적 기획으로 기본소득론이 제출되었다. 복미를 중심으로 한 1960년대와 1970년대 논의가 기본소득의 1차적 효과인 소득재분배와 탈빈곤 중심이라면, 생태주의적 지평에서 이루어진 1980년대 유럽에서의 논의에서 중심은 생태적 전환이었다. 1986년에 창립된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에도 이러한 배경이 담겨 있다. 창립을 이끈 필립 판 빠레이스Philippe Van Parijs에게도 생태주의적 출발점이 있었고, 얀 오토 안데르손 안데르손Jan Otto Andersson과 같은 생태주의 좌파도 여기에 참여하였다.* 오늘날의 기본소득 논의에서 불안정노동, 수요 부족과 저성장,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 등이 차지하는 역할만큼 당시의 논의에서 생태주의가 차지하는 역할은 지대했다고 말할 수 있다.

생태주의적 기획의 목표와 관련하여 당시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대량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생태주의적 일자리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논의한다. 대표적으로 보브루바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분배를 유도하여 생산주의적 압박을 낮추려는 기획으로서 기본소득 도입을 다루었다. 보브루바의 논의는 일자리와 소득의 분배에서 노동시장의 일차적 역할을 인정하고 기본소득을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본다는 특징을 가진다. 두 번째는 기본소득의 주요 효과를 임금노동을 넘어선 다면적이고 다중적인 자유 활동의

* 안데르손은 1983년에 출판된 앙드레 고르츠의 책("Paths to Paradise")을 읽었고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으로부터 자율적 활동으로 전환하는 데 기본소득이 지니는 역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되었다고 회고한다. <http://basicincome.org/news/2016/12/bien-stories-jan-otto-andersson/>.

증대에서 찾고 기본소득을 탈성장과 문화사회로의 이행의 단초로 보는 맥락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한 생태주의 사회철학자 앙드레 고르츠를 들 수 있다. 두 경향은 노동시장을 생산에 투입되고 소득분배를 규율하는 기본적 틀로 간주하는가 여부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보브루바는 기본소득을 시장 노동을 재분배하여 노동시장을 재구성하는 수단으로 보았다면, 고르츠는 기본소득을 노동시장 바깥의 다면적 활동의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보브루바가 기본소득의 고용 효과나 임금 효과에 주목했다면, 고르츠는 다면적 활동의 해방과 탈노동의 가능성, 노동사회를 넘어서는 생태적 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기본소득에 주목했다. 두 경향의 공통점은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개별적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며, 이는 기본소득을 고용 창출에 대한 생산주의적 압박을 해소하는 중요 수단으로 본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두 경향의 공통성인 노동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내적 차이는 분명하다. 보브루바의 논의가 노동시간 단축의 양적 측면에 한정되어 있다면, 고르츠는 임금노동으로부터 활동으로의 이행이라는 틀 속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해방적 성격과 질적 변화를 강조한다.

2. 여전히 유효한 관점

설비투자의 확대와 생태적 환경의 파괴 없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기획이나 노동력 절감 기술의 발전이 기본소득을 통해 임금노동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다면적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기본소득을 매개로 한

임금노동 중심의 사회와 성장 만능주의를 바로잡으려는 개입은 오늘날 단지 여전히 유효한 것만이 아니라 그만큼 더 절박해졌다. 오늘날 성장주의의 종말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1) 자본과 노동의 성장주의 동맹의 종말

개별 기업에게 경제의 목적은 더 많은 이윤이다. 자본주의 전체로 보면,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는 더 많은 성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성장이 늘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자본 간의 경쟁은 기술혁신을 낳고, 노동력 절감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 수요가 절감하면 실업이 증가한다. 일자리가 줄어들어 유효수요가 부족해지면 공황에 빠진다. 그런데 공황기에도 성장의 강제는 여전히 작동한다. 물건이 다시 팔리게 하려면 일자리가 늘어야 하고 노동자의 구매력이 향상되어야 한다. 결국 추가적인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1930년대 공황기에 등장한 뉴딜 정책은 이 역할을 공공투자가 담당한 경우다. 대공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케인스주의는 일자리 증대와 임금소득 안정을 통해 자본의 안정적 축적을 보장해 주는 수요 중심적 성장 정책이었다. 대공황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달라진 것 같지만 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자본주의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성장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사실이다. 케인스주의적 전환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자본과 노동의 성장주의적 동맹이다. 산업적 성장은 단지 자본의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일자리와 임금소득의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972년 로마클럽은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구 증가와 자연자원의 유한성에 대해 경고했다. 비록 산업적 팽창을 통해 임금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안정

1970년대부터 케인스주의적 성장 방식이 위기에 처하면서 성장주의 동맹의 주도권은 자본에게 쥐어진다. 케인스주의적 성장은 임금 주도 성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신자유주의 시대의 성장 방식은 노동 소득분배율 하락과 부채 의존 성장으로 바뀐다. 부채 의존 성장은 임금 하락 경향을 유지하면서도 중심국의 수요를 지속시킬 수 있는 요술 방망이였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중심국의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중심국의 부채 의존 성장과 개발도상국의 수출 주도 성장이 맞물려 돌아가던 세계경제는 파국에 빠졌다. 중심국의 소비 축소는 수출 주도 성장으로 버티던 신흥 개발도상국도 침체의 늪에 빠뜨렸다. 양적 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사용해도 세계경제는 침체로부터 좀처럼 헤어날 수 못하고 있다. '케인스주의적 성장 동맹'으로의 복귀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미 분명해질 대로 분명해진 생태적 한계에 직면한다.

2) 지구화와 생태적 한계

1980년대 이후 자본주의 중심국에서는 자본축적의 중심이 금융과 서비스 영역으로 이동하고 탈산업화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전 지구적 수준에서 탈산업주의를 말하기는 어렵다. 정반대로 세계화로 인해 저개발 국가에서는 급격한 산업화와 급격한 인구 팽창이 이루어졌다. 중심국에서도 부의 불평등은 유례없이 증가했지만 소비는 저소득층에서도 완만하게 늘어났다. 은행이 저소득층에게도 가계대출을 해 주었고 부채 의존 소비로 경제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전 지구적 분업은 중국

적 자본축적으로 이끄는 케인스주의적 성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있지는 않았지만, 산업주의 경제모델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말한 셈이다.

을 세계의 공장으로 탈바꿈시켰고, 신흥국의 값싼 공산품에 의존하게 된 중심국의 저소득층의 소비는 자국 안에 공장을 가지고 있던 시절보다 훨씬 긴 탄소 발자국과 생태 발자국을 가지게 되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산업적 성장은 근본적인 생태적 한계에 직면했다. 금융 부문에 몰려 있는 자본을 산업 생산으로 돌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가정은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기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미 생태적 한계에 도달한 산업 생산을 팽창시킴으로써 경제를 회생시킬 수는 없다. 장기 침체, 생태적 한계, 기술혁신과 고용의 반비례 관계 따위는 기본소득이 도입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을 말해 준다.

3) 제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미래

신자유주의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였다.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은 더 많은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고용 감소의 규모에 대해서는 예측들이 엇갈리지만, 고용의 양은 지금보다 축소되며 고용의 질은 악화되어 ‘긱 경제’와 ‘수요에 맞춘 고용’**이 확대되어

* 제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CT)과 다른 영역의 기술들을 상호 융복합하여 공인화하는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혁신기술은 그 기술 기반의 플랫폼이 확산되며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기술로서, 인공지능,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나노 기술, 바이오 기술, 신소재 기술, 에너지 저장 기술, 퀀텀 컴퓨팅(quantum computing) 등이 지목된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보고서(2016년 1월 18일)는 2020년까지 주요 15개국(전 세계 피고용자의 65% 차지)에서 총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510만여 개의 일자리 감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 기업들이 필요한 시점과 기간에 따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시장을 ‘긱 경제(gig economy)’라고 부른다. 미국 상무성은 2016년 6월 ‘긱 경제’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만들기 위해 이 용어의 범주를 명확히 정의하였다. ‘수요에 맞춘 고용(On-Demand Employment)’이란 노동력 수요가 있는 기업의 필요에 맞추어 계약직이나 임시직 등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많이 생겨났다.

고용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은 널리 받아들여진다. 일자리 축소와 노동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상품 순환을 유지하려면 역설적으로 노동과 소득의 연관성을 느슨하게 할 수밖에 없다. 완전 고용이 아니라 일자리의 희소성이 상수가 되어 버린 사회에서는 앞으로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막연한 가정에 기초해 있는 노동연계복지 대신에 생계 수준 소득을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제공하여 자본주의적 상품 순환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순환의 보장을 위해 자본주의가 역설적으로 자신의 토대인 임금노동에 대한 경제적 강제를 느슨하게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진행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성장주의 동맹이 불가능해지고 역설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동시간을 가능한 한 단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공급하려면 노동시간을 더 많이 줄여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임금노동을 자유로운 다면적 활동으로 해방시키는 과정이 개시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탈성장과 탈자본주의의 접점이 만들어질 것이다. 앞서 살펴본 보브루바나 고르츠의 생태주의 기본소득론의 공통적 요소인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의 연동은 두 사람의 관심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희소성이라는 시대 상황에 대한 생태주의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30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고 더욱더 절실하게 되었다. ‘수요에 맞춘 고용’의 불안정한 소득 기반을 보충하기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도 기본소득 도입이 불가피하다.

노동시간 단축의 관점에서 보면, 기본소득은 국민총소득의 일정 부분의 평등한 분배만이 아니라 노동시간, 재생산시간, 여가시간 등 사회

적 시간의 재분배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과정이 생태적 전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펴보자. 노동력 절감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체의 총노동시간을 단축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노동시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일자리는 점점 더 희소해진다. 기본소득 도입은 개별적 노동시간의 단축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이다. 만약 단축된 노동시간만큼 추가 고용이 이루어진다면 고용 효과가 생겨나고 일자리 분배가 좀 더 평등해진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소득, 일자리, 시간의 분배에서 더 많은 평등은 생태적 전환에 유리하다. 물론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의 연동은 노동력 절감 기술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켜 단축된 노동시간 전부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추가 고용으로 채워지지 않은 시간만큼은 탈성장 효과가 생겨났다고 볼 수도 있다. 단축된 노동시간은 고용 효과가 발생한 부분, 기술혁신으로 잠식된 부분, 생산량의 축소가 일어난 부분으로 나뉠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축소의 과정은 탈성장으로 나아가는 경제적 메커니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3. 평등의 생태적 가치

1) 기본소득에 대한 생태주의적 우려

장기 침체의 조건에서 기본소득은 가계소득의 토대를 만들어 주며 부채 의존 소비를 벗어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물론 이러한 효과는 생태적 관점과 일단 관계없다. 오히려 불평등 해소와 소비 효과를 통해 옹호되는 기본소득은 새로운 방식의 케인스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더 많은 소비를 촉진하는 반생태적인 해법이라는 염려도 생긴다. 기본소득이 독일녹색당과 같은 유럽 생태주의의 주요 정치세력으로부터 분명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녹색당 중에서 기본소득에 분명한 지지를 표명한 정당은 영국 녹색당, 핀란드 녹색당, 네덜란드 녹색좌파당뿐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1980년대 생태주의와 기본소득의 깊은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생태주의적 염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특히 최근의 기본소득 논의에서는 불안정노동의 확산과 임금소득 부족, 부채 의존 성장과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혁명과 일자리의 미래 등이 배경이 되면서 생태주의적 의혹이 재등장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기본소득은 탈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경기회복을 이끄는 수단이며 기본소득 도입으로 자본주의적 생태 파괴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는 염려다. 정책적 수준에서는 생태세로 거두어들이는 재원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녹색기술’ 개발에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견도 나타난다.

2) 더 평등한 분배와 생태적 전환의 깊은 상관관계

기본소득의 소비 효과에 대한 생태주의적 염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단 기본소득이 수요 관리의 측면에서 논의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성장주의 시대가 끝났다는 시대 현실을 여과 없이 표현할 뿐이다. 즉 설비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노동과 무관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기본소득이 논의되게 된 것이다.

관참은 일자리가 줄어들어 가고 있는 시대에 기본소득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종래의 공적 이전 제도들과 비교할 때 기본소득에는 가장 강력한 불평등 해소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과세와 배당의 결합이라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다. 즉 내는 세금은 다르지만 돌려받는 배당은 같다. 이와 같은 기본소득 원리에 이미 재분배 효과가 내재한다. 그간 많은 연구들이 기본소득의 탁월한 불평등 해소 효과를 논증해 왔다.

생태주의의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분배가 평등하면 평등할수록 생태적 전환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파이 자르기의 비유를 들자면, 파이의 분배가 불평등할수록 파이 전체의 크기를 늘리려는 성장주의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파이의 분배를 바꾸지 않고 파이 전체의 크기를 늘리면 상대적 불평등은 늘어나겠지만 적은 몫을 가진 사람에게 돌아가는 절대적인 크기도 그 전보다는 많아진다. 과거에 성장주의 동맹이 손쉽게 분배 투쟁을 제압할 수 있었던 이유다. 반면에 파이의 몫이 평등하게 분배될수록 성장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생태적 관점에서 파이의 크기를 늘리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이처럼 평등한 분배는 경제와 사회의 생태적 전환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주며, 기본소득은 다른 어떤 제도보다 효과적인 재분배 프로그램이다.

3) 생태적 전환을 위한 재분배: 소득재분배(기본소득의 1차 효과), 사회적 필요노동과 일자리의 재분배(기본소득의 2차 효과), 사회적 시간과 좋은 삶의 재분배(기본소득의 3차 효과)

앞서 언급했듯이,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재분배 이상의 의미를 가

진다. 기본소득은 소득재분배의 방식으로 사회구성원들에게 사회적 노동을 재분배하며 이를 통하여 여가시간과 자유로운 활동시간도 재분배한다. 기본소득처럼 노동과 무관한 소득이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으로 부여되면, 임금노동의 시간을 축소하여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더 많은 시간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소득재분배를 ‘기본소득의 1차 효과’라고 본다면, 이와 같은 1차 효과는 노동시장에 작용하여 ‘2차 효과’인 사회적 노동의 재분배로 이어지게 된다. 보브루바가 주목했던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재분배를 기본소득의 2차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나쁜 일자리를 거부할 선택권의 부여, 개별 노동자의 협상력의 강화, 전체적인 임금 상승 효과(Eric Olin Wright, 2006) 등의 변화도 2차 효과에 포함된다. 1차 효과와 비교할 때 노동시장 효과라고 말할 수 있을 2차 효과는 생태적 전환에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기본소득에 의해 설비투자 확대 없이도 신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으며, 또한 기본소득에 의지하여 사람들은 자연 약탈적인 일자리를 거부할 역량을 가지게 된다. 즉 노동 공급의 측면에서도 생태적 전환의 조건이 만들어질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도 임금노동 시간이 감소하고 자유로운 활동시간이 증대하면 자연 약탈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된다. 자본주의적인 속도의 경제에 감속장치를 달게 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앙드레 고르츠가 주목한 변화는 이와 같은 2차 효과의 중첩에 의해 하나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변화로서 ‘3차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임금노동의 주체가 아닌 다면적인 활동 주체를 역사 무대에 등장시키며 이와 같은 비시장적 주체의 탄생과 함께 생태적 전환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기본소득의 1차 효과는 소득불평등을 시정함으로써 순소비지출의

평등을 촉진할 것이다. 1차 효과에서도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을 생태 발자국과 탄소 발자국이 긴 소비로부터 해방시키는 효과도 가지게 되어 생태적 전환에 기여한다. 하지만 보다 분명한 전환은 노동시장을 재구성하는 2차 효과와 사회적 시간과 좋은 삶Buen Vivir을 재분배하는 3차 효과에 의해 달성된다. 기본소득은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감속장치로 기능할 것이며, 해방된 주체의 탄생은 정치의 재장전과 민주주의의 재활성화라는 결과도 낳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에 의해 강제된 경제와 사회의 가속화는 정치를 느리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만드는데,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정치를 경제사회와 동시화하는 길은 경제의 감속밖에 없다.

4. 탈성장과 리바운드 효과

지금까지의 서술은 기본소득에 의한 사회적 전환이 어떻게 생태적 전환으로 이어지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래에서는 생태적 전환의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동일한 문제를 살펴본다.

생태주의의 문맥에서 생태적 전환은 곧 탈성장이다. 일단 탈성장 개념부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먼저 확인해 둘 점은 탈성장은 화폐량으로 표시되는 국민총생산의 증감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생태적 전환은 전체 규모에 있어서 자원 소비량의 축소를 뜻하며, 생산의 내용에 있어서는 생태 파괴적 생산의 중단을 뜻한다. 여기에서 자원 소비의

* 하무트 로자(Hartmut Rosa, 2005)에 따르면 가속화Beschleunigung은 "단위시간당 양의 증대 또는 단위량 당 필요시간의 단축"(115면)으로 정의된다. 생활 세계에서도 가속 경제와 시간 자원 희소화에 반응하여 패스트푸드, 스피드 데이트, 멜티태스킹 등 "현재의 축소 Gegenwartsschrumpfung"가 일어난다(114면).

변동은 화폐량이 아니라 자원의 물리적 크기의 증감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예컨대 화석연료 의존성으로부터 얼마나 탈피했는지 알아보고자 석유 소비량을 비교하려면 시점 T1과 시점 T2 사이의 석유 가격 총액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배럴로 표시된 채굴량을 비교해야 한다. 물리적 크기로서의 투하 자원량이 같거나 감소하면서도 화폐량으로 표시되는 국민총생산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동일량의 자원의 효율 또는 동일 생산량에 대한 필요 자원량을 표시하는 ‘자원 효율성’은 1970년대의 석유파동 이후로 증대해 왔다.* 즉 적은 자원으로 이전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자원 소비를 줄이면서도 명목 국민총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 놀랄 필요는 전혀 없다. 화폐는 부의 소재적 내용과 무관하고, 화폐량으로 표시되는 성장도 굳이 자연 약탈적인 생산 방식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신자유주의에서도 자본축적의 중심이 금융과 서비스업으로 옮겨가면서 국민총생산의 증대와 물질적 생산의 상관관계는 줄어들었다. 탈성장은 명목 국민총생산의 감소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그런데 이는 자칫 생태적 전환을 경제체제와 무관한 기술 개발 문제로 좁히는 오류를 낳을 수도 있다. 자원 효율성 증대와 생태적 전환은 단선적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다. 자원 효율성이 개선되면 생태환경에 긍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리바운드 효과 rebound effect가 생길 수도 있다.** 즉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 1970년대의 전 세계적 스테그플레이션을 촉발시킨 석유파동은 서구 자본주의가 자원 절감 기술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된다. 독일의 경우, 자원 효율성은 1978년에 4.5%였으나 1989년에는 3.3%까지 개선되었고, 그 결과 1978년부터 1989년까지 자원 소비는 연평균 1.4% 정도 줄어들었으나 국민총생산은 연평균 2.0% 정도 증대했다. 반면에 소비에트 경제는 넉넉한 석유자원을 배경으로 산출량 증대에만 매달렸다. 이러한 차이는 소비에트 경제가 체제 경쟁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다.

** Ralf Eriksson/Jan Otto Andersson(2010), 특히 p. 18 이하.

온실가스 총량을 증대시키는 역설도 발생한다. 여기에서 자원 절감 기술의 발전을 탓한다면, 그것은 인과관계의 오류다. 기술혁신은 자원 절감에 기여했지만 생산량이 확대될 계기를 제공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문제는 기술혁신이 아니라 성장주의적 압력뿐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확대에는 자연 약탈적 성장주의의 위험이 내재한다. 더 많은 화폐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생산은 두 극단에 대해 두루 열려 있고 무차별적이다. 즉 폐기물, 오염, 비재생자원 낭비의 문제가 해결된 ‘자원 순환형 경제Circular Economy’와 ‘자연 약탈적 성장주의’의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하여 자본주의는 무차별적이다. 이러한 무차별성은 화폐의 고유한 속성인 소재적 무차별성에서 비롯된다. 여기에서 무차별적이라는 말은 시장 외부로부터의 개입 없이 그대로 두면 언제든지 자연 약탈형 경제로 되돌아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원 효율성 증대와 생태적 전환을 단선적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듯이, 총노동시간의 단축과 생태적 탈성장을 일대일 대응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물질적 생산에 필요한 인간노동의 총량은 기술혁신과 더불어 줄어들어 왔다. 그럼에도 기술혁신이 반드시 생태적 부담을 줄여 온 것은 아니다. 우선 자본주의에서의 기술혁신은 자원 절감 기술의 발전보다 노동력 절감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추동되었다는 측면도 이런 사태에 작용한다.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자원 효율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일 수 있다. 나아가 자원 절감 기술의 리바운드 효과도 작용한다. 즉 기술혁신은 인간노동의 투입뿐만 아니라 단위 생산물 당 투입되는 자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만들어내지만, 총생산 그 자체를 팽창시켜서 더 많은 생태 부담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자원 절약과 자원 순환의 관점에서 본다면, 노동시간 단축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생태적 전환으로 이

어지는 단선적인 연결고리는 없다. 기본소득과 생태적 전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단선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생태적 전환은 포괄적인 경제체제의 전환이며 기본소득의 의의도 이와 같은 전환 과제 전체에 대한 유용성과 필요성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앞서 밝혔듯이 더 평등한 소득분배, 더 평등한 일자리 분배, 사회적 시간의 더 평등한 분배는 생태적 전환에 기여한다. 아래에서 더 따져야 할 점은 이와 같은 큰 틀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생태주의적 염려 중의 하나인 생태세의 용도와 관련된 문제는 자원 절감 기술의 리바운드 효과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와 관련된다.

5. 정의로운 전환: 과세와 배당의 결합 원칙(the principle of tax and share, 생태세와 생태보너스(Ecobonus)(생태배당)의 결합

결국 자원 순환형 경제는 자원 절감 기술의 발전만이 아니라 리바운드 효과를 억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만 등장할 것이다. 자원 순환형 경제를 위해서는 환경 파괴적인 산업에 대한 금지가 당연히 필요하다. 핵발전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전기 자동차와 화석연료 자동차에 대해서도 금지주의적 결정이 필요한 시점도 언젠가 올 것이다. 문제는 완전히 금지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다. 이 경우에는 그러한 물질의 사용량이나 발생량을 감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총량 규제, 조세, 대체 기술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생태세는 당장 금지할 수 없는 생산물에 대한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규제라고 볼 수 있다. 남은 문제는 어떤 방식이 생태세의 효

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다.

화석연료와 전기에 고율의 생태세를 부과한다면 절감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강제할 수 있고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 이끌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회적 한계가 따른다. 높은 생태세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독일의 적록연정이 부딪혔던 문제다. 적록연정은 생태세 세수의 일부를 연금 부족분 충당으로 돌렸기 때문에 생태세 효과는 역진적이기까지 했다. 독일의 연금 제도는 적립식이 아니라 부과식인데 연금 보험료 징수분이 부족하면 고액 연금 수령자에게 지급될 몫부터 삭감하기 때문이다. 결국 저소득층에게 생태세를 걷어 고액 연금 수령자의 연금을 지급한 꼴이 되었다. 저소득층의 저항 없이 생태세를 올리는 간편한 방법은 분배의 개선과 생태세 부과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생태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방식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기초 위에서 지속적으로 생태세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준다. 과세와 배당을 결합시킨 이러한 방식은 리바운드 효과를 방지하는데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다. 즉 리바운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 확인되면 생태세율을 더 올리고 더 많은 생태배당을 지급할 수 있다. 생태세율을 올리면 올릴수록 자원 소비는 줄어들고 유해 물질 절감 기술은 더 발전하게 될 것이며, 사회 전체는 에너지 저소비로 전환하게 된다. 기술혁신의 전망에 맞추어 생태세율 인상의 폭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태세는 역진성을 보인다. 여기에 대한 대응 정책은

* Ulrich Schatzschneider(2014), Peter Barnes(2008), Felix Ekardt(2010)을 참조하라.

완화(mitigation), 보상(compensation), 기존 세제의 개편을 통한 조세체계 전체의 역진성 개선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은 조세행정 비용을 발생시킨다. 저소득층의 사회보장 지출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보상해 주는 방식은 생태세 재원 일부를 보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생태세와 생태배당의 결합 방식과 비슷한 효과를 낳겠지만, 재분배 규모에서는 확실히 뒤떨어질 것이고 리바운드 효과가 발생할 때 생태세를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없는 막다른 구석에 몰릴 수도 있다. 이에 반하여 생태세와 생태배당의 결합은 생태세가 오르는 만큼 생태배당도 많아지기 때문에 세율 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평등권을 보장하면서도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세제의 역진성을 개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유의미한 일이지만 생태세의 역진성에 대한 대응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생태세가 역진성을 가지더라도 생태배당의 재분배성과 결합되어 신축성 있는 세율 인상이 가능한 경우가 생태적 전환에 훨씬 유리하다.

생태보너스 또는 생태배당에 대해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나는 반드시 화폐 형태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현물 형태보다 화폐 형태의 생태배당이 효과적인 이유는 저소득층의 절약 가능성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상 에너지 제공이나 현금 제공이나 에너지 평등의 보장에는 똑같은 효과가 있지만, 현물로 제공하면 대개는 그 한도까지는 다 쓰게 된다. 반면에 현금으로 제공하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문화적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질문은 생태세 세수에 에

* 현물 형태로 무상 제공할 것인가 또는 현금기본소득을 줄 것인가는 어떤 한 방식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서비스나 재화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교육이나 의료처럼 넓은 층이 많

너지 전환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변하려면, 국가가 공적 재정으로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생태적인 공공기업에 조세 감면이나 관급 조달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경제 전체의 생태적 전환에 얼마만큼 효과적이었는가를 따져야 한다. 흔히 ‘그린딜(Green Deal)’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방식은 비용 문제로 인하여 사적 자본이 기피하는 자원 절감 기술에 대한 투자를 국가가 대신하는 것이다. 문제는 생태세율이 높지 않다면 비용의 문제로 인해 사적 자본주의 부분으로의 파급이 느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생태 친화적 기술은 개발만이 문제가 아니라 확산도 문제인 것이다. ‘그린딜’이 효과적이려면 생태세율 인상과 함께 가야 한다. 그럴 경우에만 사적 자본에게 친환경적 기술의 수용을 강제할 수 있고 자원 절감 기술의 개발에 나서도록 강제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밝혔듯이, 생태세율이 절감 기술 개발에 맞춰서 조정적 기능을 가지려면 생태배당을 통해 저소득층의 평등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생태세 세수는 생태배당에 사용하고 녹색 뉴딜의 재원은 생태세 세수를 제외한 일반 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생태세 본래의 목적은 지금 당장 금지할 수 없는 항목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함이라는 점과 생태배당을

이 소비하면 할수록 공익이 증대하는 공공재(public goods)는 현물 공공서비스로 무상 제공하는 것이 좋다. 현금을 지급하고 대학 등록금으로 쓰든지 다른 용도로 쓰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보다 대학 교육의 무상화가 낫다. 하지만 에너지의 경우라면 더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공익이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절약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정반대의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 나아가려면 일정량의 에너지를 무상으로 나눠 주는 것보다 기본적 에너지 필요를 충당할 수 있는 생태보너스를 현금으로 주는 것이 유리하다.

* 국가 주도 방식의 또 다른 문제점은 자연 재생에너지 중심 체제로의 전환은 지역 분산적인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뜻하며, 이는 분권적인 소유 형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거대 에너지 자본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통제, 지역 에너지의 분권적인 소유 형태, 아래로부터의 참여에 의해만 들어지는 국가 에너지 계획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한다.

지급하는 이유는 생태환경이 모두에게 속한 공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 조정적 기능의 측면에서는 리바운드 효과가 발생할 때 생태세를 올릴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생태세는 생태배당과 연동하여 높은 세율을 유지하고, 그 대신에 그린딜의 재원은 토건 예산이나 국방비의 삭감 등 재정지출의 재구성과 생태세 이외의 조세를 그린딜에 돌리는 방식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 그린딜의 재원을 생태세 세수 이외의 일반 조세에서 마련하는 것은 재정에 있어서의 더 많은 생태주의를 뜻하게 될 것이다.

6. 생태배당과 생태배당기여금 – 한국에서의 실현 모델

정원호/이상준/강남훈(2016, 114~115면)은 기본소득을 재원에 따라 시민배당, 환경배당, 토지배당으로 나누고 그중 환경배당은 기존의 환경 관련 세제와 별도로 GDP의 약 2%를 과세하여 조성한다. 환경배당을 위한 환경세는 탄소 배출원인 화석연료의 사용에 부과하는 '탄소세'와 원자력발전 억제를 위한 '원자력안전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원자력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후자를 전자보다 높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과세는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부과할 수도 있고 오염 원천에 부과할 수도 있다고 열어둔다. 환경세로 연간 30조원을 조달하여 환경배당으로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한다. 2015년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수는 약 13.5조원(국회 예산 정책처, 2016)으로 GDP의 약 1%에 달하는데, 환경배당 재원인 30조원은 2015년 기준으로 GDP의 약 2%에 달하고 별도로 환경배당을 위하여 과세된다. 이 모델은 기본의 생태세 세수와 별도로 일종의 준조세로서 오직 생태배당만을 위한 생태배당기

여금contributions을 걷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실현 모델의 의의는 토지, 지식, 네트워크, 금융 등과 마찬가지로 생태환경은 사회구성원의 공유부임을 확인한다는 점과 교통 에너지 환경세수는 녹색전환기금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평등하게 분배되는 생태배당과 결합된 준조세를 통해 저소비 사회로의 이행과 자원 절감 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1인당 생태배당 월 5만원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크기로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 일례로 전기 사용량과 지출액을 비교해 보면 1인당 월 5만원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 수 있다. (출처: 임소영, 「주택용 전기요금의 현황과 개편 방향」.)

소득분위별 전기 사용량 및 전기 지출액

소득분위	가구수	가구소득 (천원)	가구당 전기 사용량 (kWh/월)	1인당 전기 사용량 (kWh/월)	가구당 전기 사용량 비중(%)	전기 지출액 (원/월)	소득 대비 전기 지출액 비중(%)
1분위	1,051	469	231	165	7.5	29,730	6.3
2분위	1,050	1,086	264	156	8.5	36,159	3.3
3분위	1,051	1,670	281	141	9.1	39,438	2.4
4분위	1,050	2,207	292	124	9.5	41,478	1.9
5분위	1,050	2,733	308	116	10.0	45,079	1.6
6분위	1,051	3,245	322	112	10.5	48,012	1.5
7분위	1,050	3,804	329	109	10.7	49,789	1.3
8분위	1,051	4,479	337	106	10.9	51,556	1.2
9분위	1,050	5,469	348	108	11.3	55,131	1.0
10분위	1,050	8,305	372	115	12.0	60,694	0.7
합계/평균	10,504	3,346	308	125	100.0	45,705	1.4

자료: 「2011 가계 동향 조사」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직접 계산

소득분위별 · 가구원 수별 전기 사용량

(단위: kWh/월)

소득 분위	가구원 수							
	1	2	3	4	5	6	7	8
1	199	266	319	292	328	488	na	na
2	208	279	296	331	420	na	na	na
3	206	282	301	319	378	270	392	na
4	204	287	308	306	345	349	na	na
5	214	294	312	331	342	338	357	na
6	222	315	327	333	335	377	419	na
7	268	311	329	337	357	426	384	na
8	240	303	333	351	360	357	361	na
9	188	306	347	365	369	449	452	410
10	258	358	380	383	409	408	601	na
평균	207	293	330	347	366	398	459	410

주: 1.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균하였음 2. na는 관측치 없음으로 인해 계산이 불가능을 의미함
자료: 「2011 가계 동향 조사」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직접 계산

참고 문헌

Andersson, Jan Otto (2016): BIEN Stories: Jan Otto Andersson, <http://basicincome.org/news/2016/12/bien-stories-jan-otto-andersson/>.

Andersson, Jan Otto/Eriksson, Ralf (2010): Elements of Ecological Economics, London: Routledge.

Barnes, Peter (2008): Kapitalismus 3.0. Ein Leitfaden zur Wiederaneignung der Gemeinschaftsgüter, Hamburg.

Ekdardt, Felix(2010): Soziale Gerechtigkeit in der Klimapolitik, Hans-Böckler-Stiftung.

Gorz, André (1985): Paths to Paradise. (Galilée 1983.)

Gorz, André (1989): Critique of Economic Reason. (1988년 첫 출간)

Gorz, André (1999): Reclaiming Work: Beyond Wage-Based Society, 1999. (Galilee 1997.)

Opielka, Michael/Vobruba, Georg (1986): Das garantierte Grundeinkommen: Entwicklung und Perspektiven einer Forderung.

Opielka, Michael/Vobruba, Georg (1986): “Warum das Grundeinkommen diskutieren?” in: Opielka, Michael/Vobruba, Georg (ed.): Das garantierte Grundeinkommen. Entwicklung und Perspektiven einer Forderung, Frankfurt/Main,

Opielka, Michael (2004): Sozialpolitik. Grundlagen und vergleichende Perspektiven, Reinbek bei Hamburg.

Rosa, Hartmut (2005): Beschleunigung. Die Veränderung der Zeitstrukturen in der Moderne, Frankfurt/M.

Van Parijs, Philippe (1985): “Marx, l’écologie et la transition directe du

capitalisme au communisme” in: Marx en perspective, Bernard Chavance ed., Paris: Editions de l'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Schatzschneider, Ulrich (2014): Freiheit, Gleichheit, Gelassenheit. Mit dem Ökologischen Grundeinkommen aus der Wachstumsfalle, München.

Schmid, Thomas (1984): Befreiung von falscher Arbeit, Thesen zum garantierten Mindesteinkommen, ed. by T. Schmid.

Vobruba, Georg (1986): “Die Entflechtung von Arbeiten und Essen. Lohnarbeitszentrierte Sozialpolitik und garantiertes Grundeinkommen”, in: Opielka, Michael/Vobruba, Georg (ed.): Das garantierte Grundeinkommen, Entwicklung und Perspektiven einer Forderung, Frankfurt/Main 1986.

Vobruba, Georg (1989): Arbeiten und Essen: Politik an den Grenzen des Arbeitsmarktes, Wien.

Vobruba, Georg (1990): “Lohnarbeitszentrierte Sozialpolitik in der Krise der Lohnarbeit”, in: Vobruba, Georg (ed.): Strukturwandel der Sozialpolitik. Lohnarbeitszentrierte Sozialpolitik und soziale Grundsicherung, Frankfurt/Main.

Wright, Eric Olin (2006): “Basic Income as a Socialist Project”, In: Basic Income Studies, Vol. 1, Issue 1 (Jun 2006). 